

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33호 2001. 10. 10)

총무위원회
2001. 10. 22

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10. 10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10. 10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10.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세무과장 김영태)

가. 제안이유

- (1) 2001. 1. 13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후 행정규제개혁,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개정에 따라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, 용어의 정비, 지방자치단체 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징수의 투명성 제고와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- (2)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사용료·수수료 현실화 계획('98~2002년까지 원가보상을 100% 현실화 추진)에 의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료 공평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원가보상을 80%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(1) 제증명 수수료 개정(안 별표1)
 - (가) 수수료 징수대상 : 현행 149종→개정 182종(△4종, 신설 37종)
 - (나) 삭제대상 : 4종
 - 상위법령에서 무료 수수료 : 1종(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)
 - 상위법 및 도조례에 직접 규정된 수수료 : 2종(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의 1종)
 -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: 1종(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)
 - (다) 수수료 인상 : 1종
 - 현 원가보상을 40%이하 수수료→65% : 개별공시지가 확인서
 - (라) 신설 : 37종(근해어업허가신청외 36종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사무의 위임 확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,
-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시 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, 현행 수수료 종목별 요액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된 종목 등 4종을 삭제하고, 수수료 원가보상율에 현저히 미달되는 1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외, 수산업법에 의한 제 수수료는 종전 수산업법에서 수수료액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과 요액을 조례로 정하면서 요액도 일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.
- 수산업법 관련 일부 종목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므로서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타시군 요액 수준과 균형을 고려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